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김태수 의원 발의안

- 가. 의안번호 : 제1554호
- 나. 제 안 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박진형 의원 외 11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11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일

2)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의안번호 : 제1698호
- 나. 제 안 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서윤기 의원 외 11명)
- 다. 제안일자 : 2017년 3월 23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태수 의원 발의안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에 제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3조제3항).

2)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이유

-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호의2)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김태수 의원 발의안(이하 “1안”)은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2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5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3년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통시장법 제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전통시장법 제6조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과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법 제6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1안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정책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다.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

-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6년 12월 전통시장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법 제16조 신설).
- 법 제16조에 따르면 청년상인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상인의 연령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청년상인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입법례 현황>

구 분	청년의 나이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15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기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 현재 서울시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만 39세 이하를 청년상인으로 보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창업을 하는 청년상인에게 창업교육, 보증금·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내용은 붙임 자료 2 참조).

라. 종합의견

- 전통시장법 제6조는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1안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점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와 개입에 해당되어 시장의 권한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음.
- 한편,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세대교체와 젊은 고객의 유치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며 청년 실업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년에 대한 입법상의 정의가 다양하므로 조례에 청년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청년상인의 정의를 시행령 제6조의2(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를 참고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됨.

<붙임자료 1-관련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 ③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

I 사업개요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3~5개시장(자치구별 1개시장, 시장별 빈점포 3~7개, 총 30개 점포 지원)
 -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 청년상인 : 만39세 이하, 미성년자 제외(중기청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기준 준용)
 - ※ 지원제외대상 : 16~17년 중기청 특성화(골목형, 문광형, 글로벌 등)육성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 세부 지원기준

항목	지원기간	지원한도
임차료	1년(12개월)	계약서상 금액으로 월 113천원(3.3㎡당)이내, 최대 33㎡
보증금	2년(24개월)	점포별 최대 10백만원(2년 지원 후 환수처리)
인테리어	점포 개설시	1,000천원(3.3㎡)이내, 최대33㎡
홍보·마케팅	상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노출 지원
컨설팅·교육	상시	창업 전문 교육 및 점포 운영 맞춤형 컨설팅
간접사업비	1년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추진주체별 역할

○ 세부 지원기준

구 분	주요역할	비고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운영기관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성과관리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 청년상인 교육 · 청년상인 인력 관리 · 기존상인 마케팅 교육 및 지원 · 기존상인 및 청년상인 융합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장 추천 및 현장평가 발표 · 사업단(청년상인 육성 PM)구성 · 운영 · 점포확보 및 기반시설(인테리어) 정비 · 점포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 및 관리 · 대상시장 공동마케팅 기획 및 지원 	
청년상인 육성 PM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관리 · 임차점포 계약(주체) ·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현장 사업 수행 · 중간 및 최종 결과 보고 	1명

II '16년 추진실적

청년상인 점포 운영 현황

시장명	청년상인수	업종현황
구로시장	17	추억장난감, 수제소품, 샌드위치, 컵케익 등
정릉시장	4	파스타팝, 수제 카라멜 · 사탕, 베이커리, 수제청
증산시장	3	카페, 컵케익(베이커리 교실), 견과류 · 수제맥주

추진실적

- 청년상인 대상 창업 실무교육 및 창업 컨설팅
 - 상권분석 후 전략업종 및 대표상품 선정, 창업절차 지도, 세무관리, 고객분석 및 온라인 활용 홍보 방안 등

- 대상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존상인 교육 및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 점포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점포별 진단 컨설팅
 - 시장 홍보를 위한 SNS 채널 구축 및 운영방법 1:1 지도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간 융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상인과 기존상인간 멘토링 활동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지원

Ⅲ '17년 운영계획

□ 추진개요

- 대상시장 선정결과 ('17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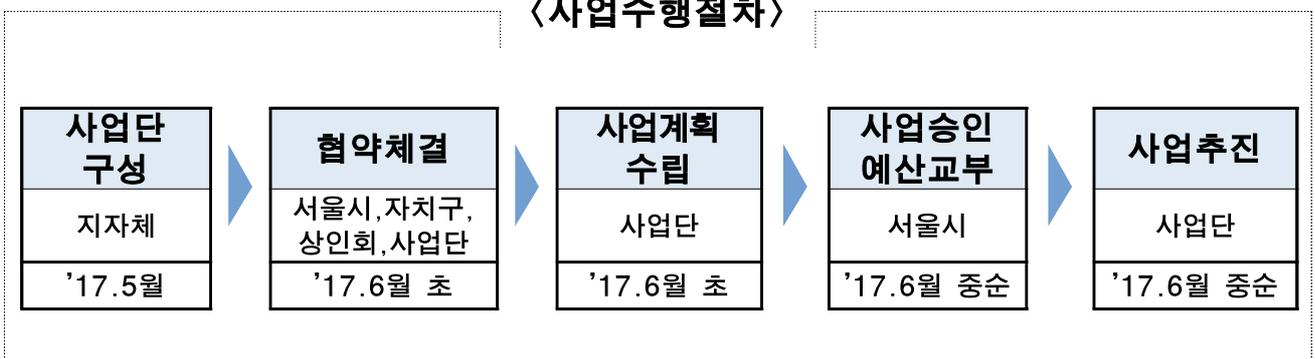
대상시장	빈점포 확보현황	청년상인 선발예정인원
세운대림상가	8개	6개팀(2개팀 2개점포 사용)
금남시장	8개	5개팀
증산시장	4개	4 ~ 5개팀

※ 증산시장은 청년상인 모집시기 지연 등 사업 완성도를 위해 2년차 지원

- 사업기간 : '17년 5월 ~ '18년 4월
- 사업방식 : 전문 운영기관 및 해당시장별 사업단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 추진절차 (사업초기)

〈사업수행절차〉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단 구성

- 자치구 주관 공개모집으로 역량 및 자질 평가를 통해 PM 선정*

* 경영, 유통,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 보유자, 전통시장 관련 사업 유경험자 등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충족하는 자

사업단 지침(안)

- PM은 본 사업만을 위해 전념하고 겸직 금지
- 근무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 PM 인건비는 간접사업비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금액* 이내로 운용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운영지침 : 인건비 지급 기준 참고

○ 사업단 운영

-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창업지원 업무 수행
- 지원대상(청년상인)과 사업수행 주체(사업단)의 이원화로 보조금 집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PM으로의 책임소재 명확성 추구

○ 사업비 운영

- (교부·정산) 사업계획 제출(자치구→서울시) → 사업계획 승인(서울시) → 선금 지급(70%) → 예산집행(자치구→사업단) → 중간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검토·잔금지급(서울시) → 최종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집행·관리) 수시 점검(자치구·서울시)

□ 세부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주체)	추진사항	추진시기
운영기관 선정 (서울시)	○ 홈페이지 공고 및 제한경쟁 입찰	'17.1~2월
사업공고 (서울시→자치구)	○ 홈페이지 공고(해당시장 모집)	'17.2월
신청 접수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 접수	'17.2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서울시)	○ 서류검토 및 현장 평가 - 심사위원단 구성	'17.2~3월
청년상인 모집 및 육성 (운영기관)	○ 청년상인 모집 및 선정 ○ 기초 창업 및 마케팅 교육	'17.4~5월
대상시장 적합업종 선정 (운영기관)	○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청년상인 심화 교육	'17.5~6월
사업단 및 협의체 구성 (자치구)	○ 자치구 주관 사업단 구성	'17.5월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서울시, 자치구, 사업단)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7.5~6월
점포 개소 (자치구, 사업단)	○ 점포 기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 청년상인 창업	'17.6~7월
기존 상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 신·구 상인 융화 프로그램 운영	'17.7~10월
중간점검 (서울시)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점검	'17.11월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최종보고서 제출	'17.12월
성과 평가 (서울시)	○ 성과평가	'17.12월